

답방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찾아서—

아마 학대를 받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이 학대받고 있음을 표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학대받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대 아동을 돋기 위해서 우선 실제로 처해 있는 신체증상, 행동증상을 이해한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 더러운 피부
- 열암불량
- 착은 화상
 또는 찰과상
- 블린 자국
- 부종, 혐증
- 치유된 병변흔적



- 이의 손상, 충치
- 충혈된 눈
- 화상
- 복합골전
- 골다파열
- 달배물에 댄 출입
- 두성문질의 빈복부
 복시지국

세계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아동권익 보호신고소」가 지난 2월 8일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에 개소되었다(전화 : 713-3361). 처음에는 아동학대신고센터(Child Abuse Complaint Center)라 명하였으나 ‘학대신고’라는 어감이 좋지 않은 등의 여론 이유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 신고소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박창석 사업부장은 “많은 주의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학대,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른들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보호정신을 함양하여야 겠습니다”라고 언급했듯이 세계아동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동관제 공무원, 전문가, 교수, 언론인, 주부대표 등이 모여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설정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비일비재함에 이 기관을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의제조지는 물론 특히 아동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이 기관의 설립목적이 된다.

이 아동권익보호신고소가 보호대상으

■ 특집 : 세계아동의 해와 간호사업



〈아동과 상담하고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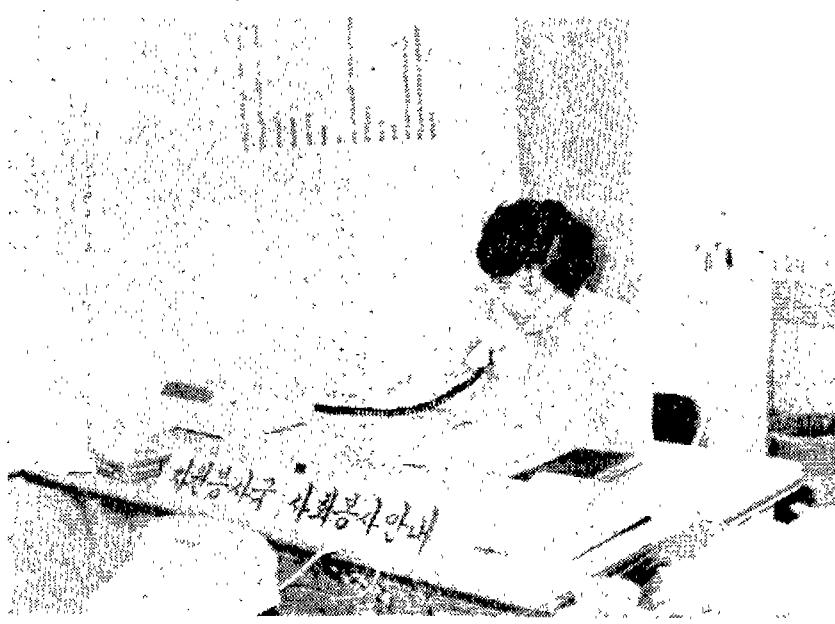
결식하는 행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흥행의 목적으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점 기타 점객업소에 종사시키는 행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또 “흥행장이나 유흥점객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이를을 상대로 등기문란 행위를 위한 영업을 하는 등 미성년자보호법 제3, 4조에 어긋나는 행위. 이외에도 미성년자와 관계되는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들로서 누구나가 자진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행위가 신고 처리되고 아동학대사례를 일반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성인들의 자발적인 시민윤리 발양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자에게 경종을 주어 관련자와 친권자에게 각성을 일깨우는 효과와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 서신 또는 직접 방문으로 빙고 있고 담당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만나 상담하거나 경고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로 청하고 있는 연령 중은 14세 미만 아동은 물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 정도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학대행위에는 우선 아동복지법 제15조의 각호를 열거한 내용이 되겠다. 즉, “불구 기형아를 육교 같은 곳에 데려다 놓고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결식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전화 상담하고 있는 장면〉

학대사실이 심한 경우엔 사적당국에 고발하여 법적처벌을 받게하는 강경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음니다"라고 박부장은 얘기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담 경고에서 가해자와의 해결이 가능했다고 한다.

개설된 이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60건으로서 2~3일에 1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중에는 전화신고가 가장 많고 직접 방문은 6건(10%) 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학대받는 어린이가 0.06%나 되며 한국도 1년 4,800건 한달 400건 이상 하였으나 의외로 적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그발정신이 약하며 미국과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어 제대로 신고를 안하는 것 같다고 박 사업부장은 유감스러운 표정을 짐작지 못했다.

현재까지의 신고 내용은 신분매달소년이 배달을 그만두려 하자 보급소장이 폭행을 가한 경우, 부친의 이중 살림으로 인한 자녀의 문제; 형의 등성에 대한 구타, 학교 선생이 부유층 아이반 편애한다는 등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가끔 영통한 내용도 신고된다. 대개 학대아의 가정적 환경은 제고될이거나 어른의 사랑이 부족한 경우라 한다.

이 센터에는 사회사업을 전공한 상담자가 2명 있다. 이들이 촉매자 역할을 하며 신고내용을 다루기 위해 가정방문하여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보교 상담하는데 문제를 깊숙히 다루기에 눈이 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할 사건의 처리기간이 걸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학을 전공한 상담자가 있으면 더 효과적인 사회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엔마나 적극적이 고 협조적인 호응이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아동권익보호신고서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인식과 관련자의 각성이 있어 아동의 권익이 더욱 옹호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朴承子 記〉

<49페이지에서>

(2) 소아과 간호원은 모든 환아를 좋아하게 된다.

환아와 원만한 유대관계가 성립되어야 간호시행에 도움이 되므로 환아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신뢰감을 얻도록 환아를 다루어야 하므로 저절로 환아와 친구가 된다.

(3) 소아과 간호원은 세심하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게 된다.

환아에게 갖은 괜찮아 요구되며 조그마한 변화에도 보호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심성 있게 환아를 다루고 행동하게 된다. ■

